

## 제주4·3사건 특별법의 단초를 연 2018년 제주지법의 재심개시결정은 위헌·위법

일시 : 2021. 5. 10(화) 11:00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사건 특별법, 2021.3.23. 전부개정, 2021.6.24. 시행)의 단초를 연 제주지방법원 2018. 9. 3.자 2017재고합4 결정은 위헌·위법하다.

(1) 제420조(재심이유)에 의한 재심의 요건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재심이유의 존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개시 결정은 그 중 유죄의 확정판결 대신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이것을 재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막연한 개념인 ‘사법기관의 판단’이 재심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된다고 본 것은 초법규적 판단으로서 그 자체 위법하다.

(2) 직무상의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개시 결정은 재심청구인들의 진술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는 구속기간의 최장기인 40일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및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미 그때로부터 70년에 달하는 세월이 흘러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그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 당시 사법당국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의 기초로 삼았던 일체의 자료가 소실되어 재심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등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직무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70여년의 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도 않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반인도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직무상 범죄의 규명에 시간적 제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인들은 제주4·3사건의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선거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그들을 희생자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 할 것이다.

2021. 5.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